

<울촌 미래첨단 국가산업단지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>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등 제출안내 사전 공고

「건설기술진흥법」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,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여수시에서 시행할 용역사업의 집행계획 및 용역수행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(PQ) 자료 제출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. 8. 26.

여 수 시 장

1. 용역사업 집행계획

(단위 : 천원)

용역명	용역기간	용역비	비고
울촌 미래첨단 국가산업단지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	12개월	273,715	PQ

※ PQ : 입찰참가 사전심사(Pre-Qualification)

- 용역 상세내용은 과업내용서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용역비는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이며 방침변경 등으로 사업내용이 변경, 취소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낙찰 후 수급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.

2. 입찰대상 용역업체 선정

가. 「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」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사업수행능력을 평가 후 입찰에 참가할 자를 사전 심사하여 여수시에서 정한 일정 점수 이상 득한 업체를 선정하여 입찰을 실시합니다.

나. 선정된 업체는 별도 통지하지 않으며, **2026. 9~10월 중** 입찰을 실시코자 하니 전자입찰 개시 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(<http://www.g2b.go.kr>)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, G2B에 미 입력된 업체는 선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아시기 바랍니다.(입찰 시기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)

3. 참가자격 및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

가. 참가자격

- 1) 「건설기술진흥법」 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(종합 또는 설계·사업관리-일반 또는 설계·사업관리-설계등용역-일반)을 등록하고 「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」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 건설부문(도시계획, 도로 및 공항, 교통, 토질·지질, 상하수도)에 대한 신고를 모두 필한 업체 또는 「기술사법」 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모두 필한 업체
- 2) 단독 또는 공동수급(공동이행방식/5개사 이내, 최소지분율 5% 이상) 구성이 가능하며, 각 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.(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)
 - 주된 영업소(본점)의 소재지가 전라남도인 지역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「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」의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가점을 부여
- 3)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,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(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)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.
- 4)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대표사는 도급비율의 비중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하여야 합니다.

나. 평가자료 작성기준 교부 및 평가자료 제출(접수)

- 1) 작성기준 교부: 인터넷 게시로 갈음함
 - 여수시청 홈페이지 (<http://www.yeosu.go.kr>)와 나라장터 홈페이지 (<http://www.g2b.go.kr>)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.
- 2) 평가자료 제출: 2026. 9. 16. (수요일)09:30 ~ 17:00
- 3) 제출장소: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공영개발과(여수시청 웅천임시청사) (☎ 061-659-4581 /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웅천7길 11)
- 4) 제출방법: 직접방문 접수(우편, E-mail, 팩스 등 접수 불가)

5) 제출서류(사업수행능력평가)

- 사업수행능력평가서: 2부(원본 1부, 사본 1부)
- 사업수행능력 평가서, 참여기술인 조직도, 업무중복도, 자기평가서 파일을 평가자료 제출 마감일까지 업무관계자 메일(jeondg52@korea.kr)로 송부 및 확인

※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: 사업자등록증 사본, 인감증명서, 법인등기부등본, 공동수급협정서 기타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서류 등(제출서류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합철)

6) 평가자료 작성방법

- 「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」 제28조 제1항에 따라 우리 시에서 정한 「평가 기준 및 평가자료 작성기준」에 적합하게 작성합니다.

7) 일반사항

- 본 용역 참가등록 및 평가서, 제안서 제출은 용역업체(공동수급체)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소속회사의 직원(대표자 위임장, 재직증명서, 신분증 지참)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, 참가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참가등록·제출할 수 있습니다.
- 확인을 위하여 필요시 우리 시에서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.
- 반드시 공동수급 대표회사 명의로 평가자료를 제출하고 공동수행에 따른 각각의 지분율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.
- 제출 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, 평가 자료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참여업체가 부담합니다. 또한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.
-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는 「건설기술진흥법」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과 여수시에서 작성한 평가기준 및 작성요령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, 제출된 평가 자료의 내용변경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정하지 않으며, 만일 업체가 제출한 평가 자료의 내용이 허위 또는 위·변조 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 취소 또는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,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.

- 공고문 및 평가서 내용에 이견이 있을 시에는 여수시(공영개발과) 유권해석에 따릅니다.
-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에 관한 질의는 참여업체에 한하여 대표자 명의의 문서로 가능하며, 전화질의 등에는 일체 응하지 않습니다. 문서로 질의한 사항은 그 회신내용을 여수시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.(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음)

4. 입찰참가 대상 용역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

가. 「건설기술진흥법」 제35조,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,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여수시에서 제시한 「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」에 따라 **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일정점수(85.29점) 이상 득점한 업체만** 입찰에 참가 할 수 있으며, **해당업체가 1사인 경우는 재공고** 합니다.

나. 여수시에서 작성한 「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」에 의거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평가하며,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 자료 작성 시 이 기준을 숙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, **평가는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**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.

다. **낙찰자 결정**은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14조, 제42조 제1항 내지 제4항, 「**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**」(**행안부 예규**)에 따라 결정합니다.

- 적격심사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용역수행능력의 「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 평가」는 평가에서 제외하며 배점한도(1점)를 부여합니다.

※ 「지방계약법 시행규칙」 제25조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점수를 적용받는 경우 참가자(공동구성원 모두)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안내공고일 전날 부터 입찰일까지,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.

- 경영상태 평가는 P.Q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(만점)를 모두 부여합니다.

5. 기타 유의사항

- 가. 사용언어는 「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」 제8조에 따라 **한국어를 사용**하여야 합니다.
- 나. 본 공고에 언급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」(행안부 예규), 「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」(행안부 예규), 전자입찰 이용자 약관, 전자입찰 특별유의서, 본 용역의 발주계획, 과업내용,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,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.
- 다. 평가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가격입찰 시까지 소속회사에 재직하여야 합니다. 또한 업무의 연속성,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본 위탁관리용역의 준공 시까지 계속 근무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우리 시에 통보하고 동등이상의 기술인으로 대체승인을 요구하여야 합니다. 교체 기술인은 그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여 교체여부를 결정합니다.
- 라. 평가결과는 해당 참여회사에 개별통보(총점)하며,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. 단, PQ 평가항목 중 “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”평가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.
- 바. 평가일정, 용역기간, 용역비, 과업지시서는 사정에 의하여 일부 변경 될 수 있으며, 정정 공고내용은 여수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재로 갈음하오니 참여업체는 입찰 전까지 수시로 열람 하여야 하며,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 외 기타 문의사항은 **여수시 공영개발과(☎ 061-659-4582)**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- ※ 홈페이지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